

# 안전관리규정

제정 2003.02.17      개정 2020.08.11      개정 2026. 3. 1  
개정 2014.10.21      개정 2022.05.19  
개정 2018. 9. 1      개정 2024.12. 4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 교직원, 학생, 본 대학에서 활동하는 외부인, 출입하는 방문객 및 사용하는 모든 시설물·부대 장비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고”라 함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또는 행동에 기인되어 인명에 사상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초래한 비정상적, 비능률적인 것으로서 계획되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2. “위험물”이라 함은 화재, 폭발의 원인이 되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 물질등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고예방과 대비, 유사시 비상대응에 관한 활동을 총칭하며, 관련법규와 본 대학 관련규정의 준수활동과 자발적 안전개선활동을 포함한다.
4. “위험요인”이라 하면 인적피해, 물적손실 및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근원적 잠재요인이 혼재된 상태를 말하며, 자극에 의한 기계적 고장, 시스템의 상태, 구성원의 실수로 물리, 화학, 생물학, 심리, 행동적 요인을 말한다.
5. “안전”이란 위험요인의 위험도를 허용 가능한 리스크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험성 평가”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7.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8.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제4조(책임과 의무) 본 대학 분야별 안전과 관련하여 관리자 등으로 선임된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관리적 책임을 진다. 단, 독립채산 기관, 연구 및 주거시설의 경우 임대사용의 주체에서 자체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5조(안전업무 우선) 각 학과 및 부서의 장은 사고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려, 조치하여야 한다.

## 제 2 장 조직과 직무

제6조(조직) ① 본 대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학본부에 안전관리 주관부서(별표1)를 둔다.

② 분야별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책임부서를 두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각 학과 학과장, 행정부서장은 각 부서 및 전문 분야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분야별 안전관리자, 또는 학과안전관리 조직구성 및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개정: 2026.3.1.)

제7조(안전관리책임자) ① 각 학과 학과장 및 행정부서의 장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각 학과 및 부서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6.3.1.)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다한다.

1. 안전관련 규정의 준수
2. 각 부서별 안전관리 조직 운영
3. 사고의 예방과 조치 및 보고
4. 안전문화 정착 및 홍보 활동
5. 각 부서별 안전관련자 관리·감독
6. 부서의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훈련 등
7. 각 분야별 위험성 평가 시행

제8조(분야별 안전관리자) 각 전문 분야에는 분야별 안전관리자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토록 한다.

1. 안전관리주체의 제반 안전규정준수 및 안전점검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
3. 사고조사 및 보고
4. 비상대응계획수립 및 전파
5.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안전관리위원회) ① 본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하부에 '학과 안전관리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 안전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다만, 부총장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교학업무를 담당하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기획처장, 교무처장, 입학학생처장, 행정처장, 연구처장,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에 학과 혹은 전문분야별 안전업무 관련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간사는 안전관리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필요 시, 간사가 동의하고 위원장이 재청하여 특별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이 때 특별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회 개최 시에만 한한다.

제11조(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안전업무 수행기간으로 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전관련 규정의 제·개정
2. 학과 및 전문안전관리 위원회의 제청에 의한 심의사항
3. 중대안전사고에 대한 사후 조치에 대한 사항
4. 실험실 폐쇄 등 중요안전정책의 심의사항
5. 방사선안전에 관한 중요 심의사항
6. 기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13조(회의소집과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장 안전일반

제14조(안전교육) 교직원 및 학생 등은 본 대학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제15조(안전보고) 안전관리책임자는 대학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주관부서가 요청할 시에 안전관련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대응) ① 각 부서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에 따른 초기대응 및 비상연락을 취해야 한다.

② 해당 안전관리자는 사고현장에서 사고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수행하며, 필요시 타 부서나 외부의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기타 자세한 사고대응절차는 분야별 관련법규 및 본 대학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7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각 부서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 일주일 이내에 각 부서장의 명의로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분야별 안전관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주관부서는 제출된 사고경위서를 검토하고 별도 사고조사 수행과 함께 사고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관련계통을 통하여 보고한다.

③ 안전관리 주관부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고정보를 교내·외에 공포할 수 있다.

④ 기타 사고보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은 대학 내 관련규정 및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18조(손해배상의무) ① 교직원 및 학생 등 본 대학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수칙을 미 준수하여 인적·물적 손해발생시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며, 책임이 단체에게 있거나 소재가 불명확할 시 학과별 평가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과 및 분야별안전관리위원회에서 사고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안전관리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안전보건관리체계) 대학은 대학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20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규정 제19조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한다.

2. 대학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한다.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2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한다.

가. 관리감독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부여한다.

나. 관리감독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한다.

5. 대학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한다.

6.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7.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제21조(작업중지) ① 대학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학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① 대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포상) ① 대학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2.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3.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회사의 관계 규정에 의한다.

제24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관련규정 및 관련법규에 따른다.

제25조(세칙) 이 규정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02월 27일 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0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8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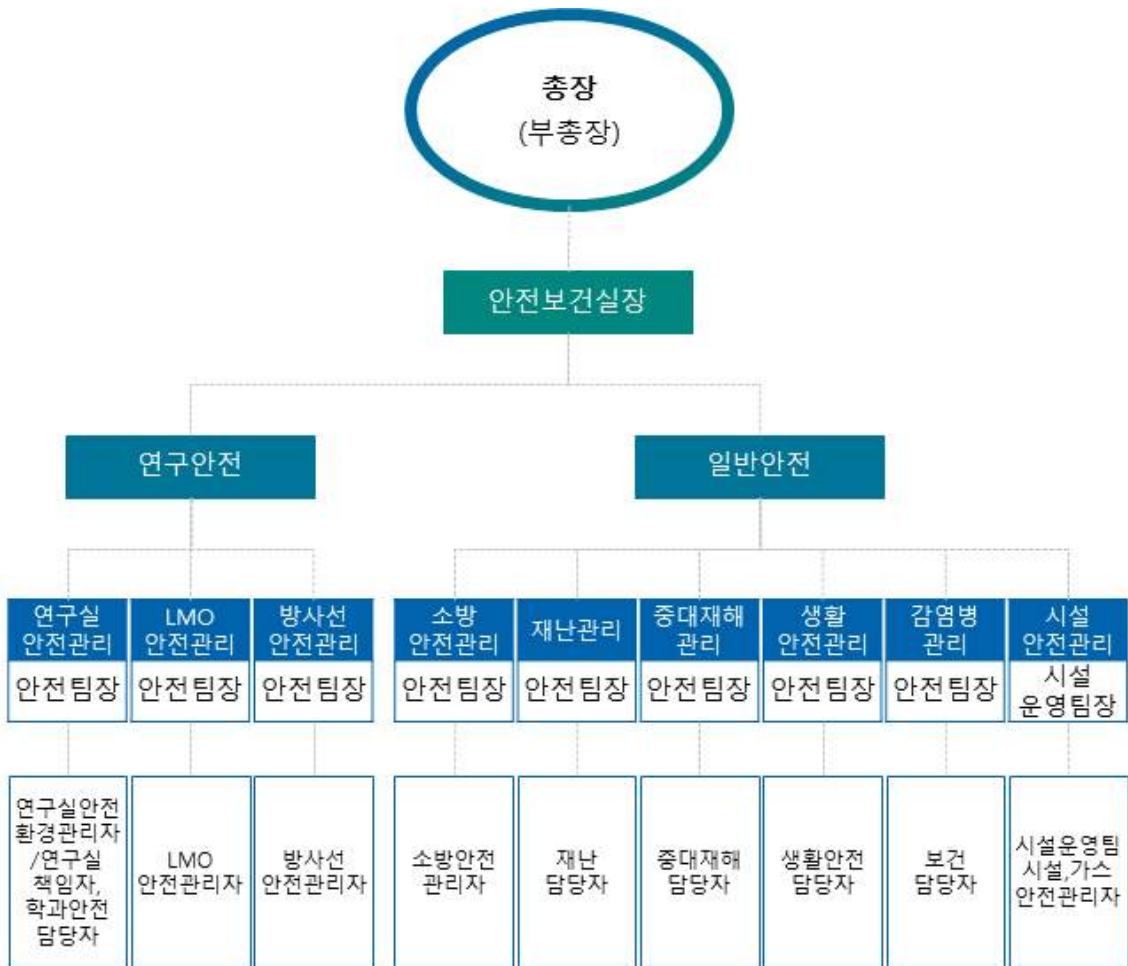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 1) 대학 안전관리 조직체계



※ 연구실 및 분야별 전문안전관리규정. 조직: 별도로 정함

※ 각 분야별 안전관리 조직 및 학과.전문위원회 구성

※ LMO: 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 생물체)